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40,973,500	91,229,205
일반회계	2,635,845,038	79,075,351
특별회계	405,128,462	12,153,854
공기업특별회계	318,616,931	9,558,50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3,220,466	4,596,61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5,396,465	4,961,894
기타특별회계	86,511,531	2,595,346
교통사업 특별회계	31,111,780	933,35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72,086	53,16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55,964	100,679
대지보상 특별회계	1,562,225	46,867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16,797,405	503,922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0,320,331	309,610
균형발전특별회계	21,591,635	647,74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968,69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